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. 6. 23 선고 2019가단1750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0. 5. 19.

판 결 선 고 2020. 6. 23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원고가 2019. 1. 27. 피고에게 3,500만 원을 송금해준 사실, 그중 1,5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

대여해준 것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

주위적으로, 원고는 위 3,500만 원 중 대여사실에 다툼이 없는 위 1,500만 원뿐 아니라 나머지 2,000만 원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, 한편 갑 제3호증에 나타난 문자메시지들에서도 1,500만 원과 2,000만 원이 나뉘어서 언급되고 있는 점, 을 제1, 2, 5,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위 2,000만 원이 모두 주식회사 D 쪽에 상품구매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위 금액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구매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, 원고가 당초 피고 계좌로 입금된 3,500만 원 전액이 원인 없이 입금된 것이라고만 주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,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,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결국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.

예비적으로, 원고는 위 2,000만 원이 아무런 원인 없이 피고에게 입금된 것이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(오히려 위 각 인정사실들에 의하면, 원고가 어떤 원인으로 피고에게 위 2,000만 원을 포함한 총 3,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),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최두호